정책자료 2017-02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정은희 · 김현경 · 이병재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복지욕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맞춤형 복지정책 발전방향 연구
-4차 산업혁명 대비 복지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공동연구진】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병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책자료 2017-02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발 행 일	2017년 12월
저 자	정 은 희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정 가	비매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500-5 93330

발간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망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2015년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개별급여로 전환한 점이다. 2017년에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된 이후부터 제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등 제도 설계와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는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08년도부터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운영을 통해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포럼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포럼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기초보장제도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feedback)되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사업은 정은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현경 부연구위원과 이병재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본 사업을 위해 토론에 참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제6기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본 연구원의 기초보장연구실 박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모니터링 방법 ····· 4

제3절 기대효과와 한계 ····· 6

제2장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 9

제1절 기초보장제도 개요 ····· 11

제2절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 22

제3장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 35

제1절 자활지원제도 개요 ····· 37

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 43

제4장 개선 방향 ····· 69

제1절 맞춤형 급여 개선 방향 ····· 71

제2절 자활지원제도 개선 방향 ····· 75

참고문헌 ····· 83

표 목차

〈표 1-1〉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활동기간 ····· 4
〈표 1-2〉 2017년 모니터링 포럼 활동사항 ····· 6
〈표 2-1〉 생계급여의 주요 내용 ····· 12
〈표 2-2〉 의료급여의 주요 내용 ····· 12
〈표 2-3〉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 ····· 12
〈표 2-4〉 교육급여의 주요 내용 ····· 13
〈표 2-5〉 자활급여의 주요 내용 ····· 13
〈표 2-6〉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15
〈표 2-7〉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17
〈표 2-8〉 2017년 기준 임대료 ····· 18
〈표 2-9〉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 19
〈표 2-10〉 교육급여 지급 내용 ····· 19
〈표 2-11〉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22

그림 목차

[그림 2-1]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 16
[그림 2-2]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개괄 ····· 21
[그림 3-1] 자활사례관리 업무흐름도 ····· 38
[그림 3-2] 자활근로사업 유형 ····· 39
[그림 3-3] 고용노동부 취업우선지원 사업 흐름도 ····· 39
[그림 3-4] 선정 및 관리 절차 ····· 41
[그림 3-5]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 ····· 42
[그림 3-6] 자활지원제도 전달체계 ····· 43

제 1 장 서론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모니터링 방법
제3절 기대효과와 한계

1 서 론

제1절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임.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제도와 혼용)가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제도 집행 대상자가 인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에 초점을 둠.

□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정책 목표 설정, 전달체계 구성 등 제도 설계와 관련성이 있으나, 설계된 제도가 원래 기획된 방향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지 여부와도 관련성이 높음.

○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역할 중 특히 복지정책의 중복방지 및 유사사업 조정을 위해 사전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현장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정책평가를 강조하였음.

-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 근거한 사업집행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이를 정책에 환류(feedback)시키는 것은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본 사업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2008년부터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럼을 운영하여 왔음(김태완, 전지현, 2016, p. 4).

○ 모니터링을 위한 포럼단 운영은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성을 강화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evidence-based policy)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초보장제도의 집행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 수정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자 함.

○ 또한,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보건복지부 담당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운영체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지역복지 관련 담당 조직 및 인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

제2절 주요 사업내용과 모니터링 방법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구성과 운영

○ 제6기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추가 위촉

- 2008년부터 제1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7년에 제6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함(〈표 1-1〉 참조).

〈표 1-1〉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활동기간

기수	활동기간
1기	2008~2009년
2기	2010~2011년
3기	2012~2013년
4기	2014년
5기	2015~2016년
6기	2017~2018년

○ 모니터링 전문위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실무자임.

○ 50여 명의 규모로 구성.

○ 전문위원 선정기준은 기존 전문위원 중 모니터링 포럼과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 이외에 본 연구원에 다양한 형태(예, 연구용역 및 자문위원)로 기여한 현장 전문가 등을 우선순위로 재위촉함.

- 시도, 지역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기초보장제도 분야별(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추가로 추천받아, 임기 2년(2017~2018)의 제6기 전문위원의 내실화를 도모함.

□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성과보고

○ 현장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은 포럼과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 포럼과 워크숍에서는 기초보장제도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추진되는 정책, 집행, 평가, 사후관리체계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제도 수정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위원 간 관련 의견을 공유함.
- 정책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해당 지자체, 전문 영역별 현장 전문가, 실무자와 공유·확산함으로써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정책 홍보를 도모.

○ 모니터링 포럼 참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정책자료 등으로 구성하여 포럼의 성과를 공유함.

○ 2017년 제6기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의 활동사항은 아래 〈표 1-2〉와 같음.

- 1차 포럼과 1차 서면의견 조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논의함.
- 2차 포럼과 2차 서면의견 조사에서 자활지원제도의 집행상 문제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함.
- 1차와 2차 포럼과 1차와 2차 서면의견 조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지원제도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함.

〈표 1-2〉 2017년 모니터링 포럼 활동사항

날짜	활동사항
2017. 4. 18.	제6기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포럼(1차)
2017. 5.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서면의견 수집
2017. 11. 8.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포럼(2차)
2017. 11.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서면의견 수집
2017. 12. 22.	2017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 모니터링 결과의 관련 보고서 반영 및 정책 건의

○ 모니터링에서 제시된 제도별 문제인식과 관련 정책 개선방향은 워크숍을 통해 기초보장실 내의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제3절 기대효과와 한계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영역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기초보장제도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의 개선사항 제시.

○ 이는 제도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기초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 영역별, 지역별, 복지사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는 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된 포럼 운영과 전문위원 위촉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집행 및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장 중심의 정책 연계 및 집행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본 사업은 기초보장제도 집행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가 인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했다는 한계가 있음.[1)]

○ 수요자 관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음.

1) 본문 중 제2장 제2절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제3장 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제4장 개선방향에 기술된 내용은 모니터링 포럼위원의 의견을 그대로 살리고자 하였음. 그러나 문맥상 내용이 맞지 않거나, 강한 표현 등은 수정하였음을 밝힘.

제 2 장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제1절 기초보장제도 개요
제2절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2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제1절 기초보장제도 개요[2)]

1. 기초보장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 기초보장제도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보건복지부, 2017a, p. 209).

-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를 맞춤형 급여[3)]로 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임.

□ 급여의 종류와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며, 그 외에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음.

- 이 중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 해산·장제 급여를 제외한 각 급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1〉부터 〈표 2-5〉와 같음.

---

2)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의료급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교육부, 2017)를 바탕으로 각각 기술하였음.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급여종류별 사업안내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3) '맞춤형 급여'는 법률용어가 아님. 통합급여 방식이 아닌 욕구별로 급여를 분리하고, 각 급여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달리 두어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함.

〈표 2-1〉 생계급여의 주요 내용

사업 목적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사업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 또는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표 2-2〉 의료급여의 주요 내용

사업 목적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여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지원법률 등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 외 재해구호법 등 타 법령에 기초한 수급권자
사업 내용	급여 지원 내용은 의료 목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모두 포함하며(진찰 및 검사, 약제 등의 지급, 수술 및 처치, 예방, 재활, 치료, 입원간호, 이송 등),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 의료급여 사업안내.

〈표 2-3〉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

사업 목적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거비의 부담이 많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주거급여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사업 내용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됨.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는 임차급여 지급,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직접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자료: 국토교통부. (2017).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표 2-4〉 교육급여의 주요 내용

사업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해 적정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함.
대상자	학교(또는 시설)에 입·재학하는 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사업 내용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 입학금·수업료(고등학생)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고등학생) : 해당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부교재비(초·중·고등학생) : 1인당 41,200원 (연1회) - 학용품비(중·고등학생) : 1인당 54,100원 (연2회)

자료: 교육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표 2-5〉 자활급여의 주요 내용

사업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역량과 자활능력을 배양,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함.
대상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일을 통해 자립과 탈빈곤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사업 등에 참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음. 수급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중 자활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비수급자
사업 내용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급여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자활사업(1) 안내.

2. 수급자 선정기준

가. 지원 대상

□ 기초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 시 연령이나 장애 등 인구학적 특성 등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수급자 선정 시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고 기타 부가적인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을 실시

나. 선정 기준

○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됨.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맞춤형급여 개편 이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결정되고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순서로 선정기준이 완화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함(보건복지부, 2017a, p. 50).
-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기준이 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됨.

○ 2017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이

적용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됨.

- 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 2-6〉과 같음.

〈표 2-6〉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주: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x.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보장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에만 적용되고, 교육급여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4)]

○ 부양의무자 기준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됨(보건복지부, 2017a, p. 53).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수준은 부양의무자(혹은 가구)의 판정소득액을 통해 산정되며, 기본 개념은 아래 〔그림 2-1〕과 같음.

4)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폐지.

〔그림 2-1〕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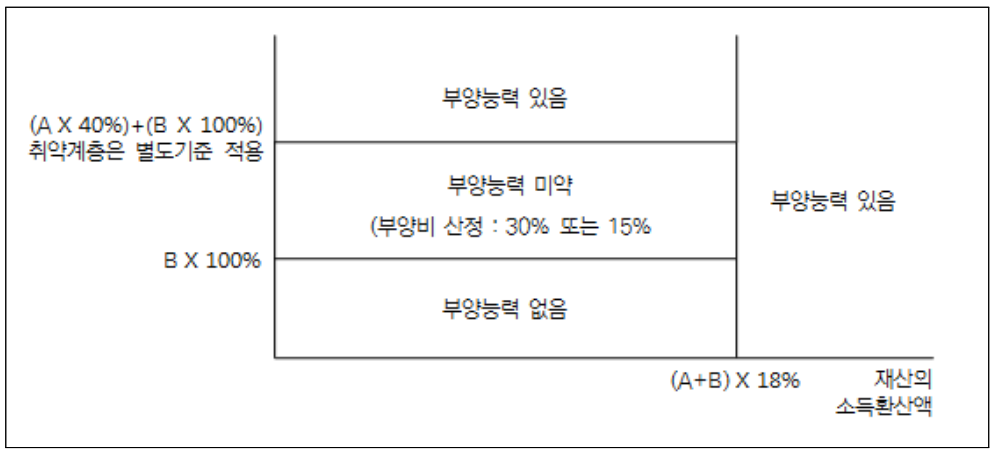

주: 1) A는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B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함.
2)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52.

3. 급여종류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는 의복 또는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받음.

○ 급여 수준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을 합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기준중위소득 30%)이 되도록 함.

○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보건복지부, 2017b, p. 4).

- 지원 대상은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타법(재해구호법, 의사상자 지원 법률, 입양특례법,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급권자를 포함.

○ 지원 유형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됨.

-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를 포함하며,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됨.

○ 급여에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되며,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함.

○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음.

〈표 2-7〉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2)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 6.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급여는 임차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됨.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전액 지원(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혹은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음.

〈표 2-8〉 2017년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195,000	174,000	143,000	133,000
2인	225,000	195,000	154,000	143,000
3인	266,000	236,000	184,000	174,000
4인	307,000	276,000	215,000	195,000
5인	317,000	287,000	225,000	205,000
6-7인	369,000	338,000	256,000	236,000
8-9인	405,900	371,800	281,600	259,600
10-11인	446,490	408,980	309,760	285,560

주: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2017).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 xxvii.

○ 수선유지급여

- 수선유지급여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제공
  - 급여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함.

〈표 2-9〉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과 산정 방법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3% 이하인 경우		80% 지원

주: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2017).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 xxvii.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적정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보장 수급가구 외에 의사상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급여 지급.

○ 급여는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급하며,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2-10〉 교육급여 지급 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41,200원	연1회 일괄지급	수급자 현금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54,100원	1,2학기 분할지급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주: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자료: 교육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p. 6.

□ 기타급여

○ 해산급여

- 기초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제공(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만 해당).

- 급여는 출산 시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며, 쌍둥이를 출산 시에는 120만원을 지급함.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품을 지급.
- 급여는 사망자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함.

4. 전달체계[5)]

□ 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등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

-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구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재산 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 외 가구 특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

-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을 조사하여 향후 자활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

□ 급여의 결정 및 통보

○ 수급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급여 지급 방법 및 급여 개시 시기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5) 본 절에는 기초보장제도의 개괄적인 전달체계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의 전달체계에 따라 급여가 제공됨. 급여종류별 구체적인 전달체계는 각각의 사업안내를 참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 실시 이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향후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그림 2-2〕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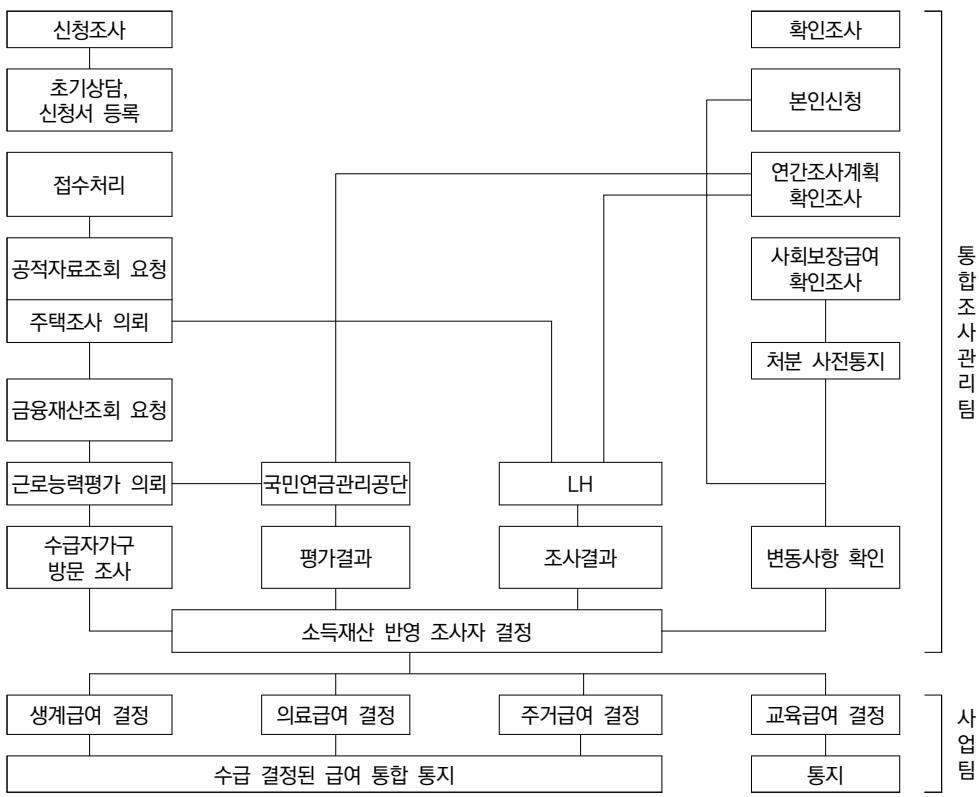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8.

5. 기초보장수급자 현황

□ 2016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약 163만 명(112만 6천 가구)이며,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3.2%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임.

○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4.4%, 시설수급자는 5.6%임.

〈표 2-11〉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가구, 명, %)

연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수급률	가구	인원	인원
2005	809,745	1,513,352	3.1	809,745	1,425,684	87,668
2006	831,692	1,534,950	3.2	831,692	1,449,832	85,118
2007	852,420	1,549,848	3.2	852,420	1,463,140	86,708
2008	854,205	1,529,939	3.2	854,205	1,444,010	85,929
2009	882,925	1,568,533	3.2	882,925	1,482,719	85,814
2010	878,799	1,549,820	3.1	878,799	1,458,198	91,622
2011	850,689	1,469,254	2.9	850,689	1,379,865	89,389
2012	821,879	1,394,042	2.7	821,879	1,300,499	93,543
2013	810,544	1,350,891	2.6	810,544	1,258,582	92,309
2014	814,184	1,328,713	2.6	814,184	1,237,386	91,327
2015	1,014,177	1,646,363	3.2	1,014,177	1,554,484	91,879
2016	1,126,510	1,630,614	3.2	1,035,435	1,539,539	91,075

자료: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19.

제2절 기초보장제도 모니터링 결과

□ 보장수준 조정

○ 생계급여 수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상황에서 받는 현금(예, 사망 유족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필요.

- 별도 공제액이 없는 경우 현재 생계급여는 농어촌의 경우 일상생활 유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지만,
- 광역시 이상은 현금으로 지출하는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필

요가 있음. 개편된 주거급여가 급지별로 구분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임.

-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일부 공적이전소득(사망 유족연금 등)이나 위기상황에서 받게 되는 현금 등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충적 급여에서 자립 급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 중 현금급여 보장수준의 조정이 필요함.

- 대부분 월세가 최소 3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생계급여에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반대로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월세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생계급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 근로능력 판정기준 현실화: 소득활동 가능한지 판단 필요.

-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함.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대상자 중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활동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활동능력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 현재 평가 기준은 단순히 거동이 가능한가, 인지 능력이 있는가, 활동범위가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가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소득활동 참여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현장으로 투입되면 산업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큼.
  - 이러한 사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가 중단됨. 활동능력평가는 소득활동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선되어야 함.
- 근로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맹점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처음 수급 판정을 받을 때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할 의지가 있다고 호

소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부 수급자 판정을 받고 자활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 근로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별로 없어서 유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예) 천식질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계절적으로 종사 가능한 업무가 제한되어 있고,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 이런 경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어서 근로능력 불가 판정을 다시 받는 경우가 있음.

○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자 등 진료기록이 부재한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 기준 개선.

-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자 등이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발굴되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의학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면 질병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조건부 수급자가 됨. 수급자 결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지기도 함. 장애인 등록 이력, 병원 진료 및 치료 이력 등은 없지만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때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수급자 판정은 받지 못함.
  -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여 3개월 동안 생계급여를 받게 되지만 자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탈락하고 의료급여만 받게 됨.

○ 조건부 수급자 확인소득 부과방식 기준과 법적 근거 보완.

-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지출 실태를 파악해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기준이 모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판정 시 서류 통일 및 간소화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판정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가족관계 해체, 부양의무의 거부, 기피, 단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마다 증

빙서류도 다르기 때문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제출서류를 통일하거나 간소화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을 위해 찾아온 대상자에게 설명하기에 용어가 어렵고 제도 내용이 복잡한 부분이 있음. 담당자 또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수급자 선정 시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가 됨.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관계이지만 가족이 해체된 경우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대상자의 저항도 큼. 가족관계의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부양 관계가 소원하여 부양의무자 서류 요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음.
  -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제출하기가 특히 어려운 서류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동의서임. 부양의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관계가 소원할 경우 해당 서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점진적 폐지.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됨. 국가 재정의 한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무원과 전문가의 역할임.

□ 급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탈수급 효과 증진.

- 의료급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생계급여는 30%인데 10%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 탈수급률이 높다면 생계급여 자격 기준이 낮기 때문이지 실제로 자립 능력을 갖게 되어서 탈수급한 것은 아님.
  - 실제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수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활은 참여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즉, 신규수급자가 되는 것은 까다롭지만 한 번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를 수급하다가 탈락하고 재수급하는 상황이 반복됨.
- 소득 기준, 근로능력평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수준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급여별 선정기준만을 달리함으로써 일부 급여의 대상자만 증가하였을 뿐임. 수급자가 자활하도록 돕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함.

- 자활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활의지를 꺾는 정책은 아쉬운 부분임. 탈수급 의지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장려 방식 필요.

-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수급자는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하기 때문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수급자가 지역자활센터로 이관되는데, 근로능력과 의욕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취업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상대적으로 근로능력과 의욕이 떨어지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사회서비스 차원의 일자리를 장려해야 함. 현재 자활 정책은 시장형 사업을 장려하고 있어서 자활사업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음.

○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이후 다른 제도와 연계 필요.

- 4인 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도 생계급여는 탈락함. 통합급여일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유지할 경우 탈수급 이후 다른 제도와 연계시킬 수 있었는데 맞춤형급여 이후 생계급여가 탈락해도 다른 급여를 받기 때문에 타 제도 연계가 불가능함.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안전망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음.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담당기관의 업무 명확성과 책임성 강화.

- 교육청(교육급여), 주택공사(주거급여)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민원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음. 담당 기관이 각 급여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응대하도록 바뀌어야 함.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각각 다른 부처 및 기관으로 이전은 됐으나 기존 사회복지공무원이 하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제도 정착을 위해 담당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실무자 교육 외에 각종 사업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배부할 필요도 있음.

- 국토부에서도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음. 담당 부처에서 실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 역시 효과를 얻지 못함.
- 주거급여의 현물급여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음. 그러나 LH에서도 집보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임.

○ 수선유지급여 수급 중단 가구에 대한 조치와 수급대상자 조사 및 관리 필요.

-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수를 기다리는 중간에 수급이 중단되거나 이사를 가면 수급이 중단되는 맹점이 있음.
  - 주택조사와 주거급여 수급 여부의 결정은 연초에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 작업은 연말까지 실시되지만, 보수 작업 결정과 시행 시점 기간 동안 수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수를 못 하게 되어 예산을 반납하게 됨.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급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수급이 결정되면 보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함.
  -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 수급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족도가 높지 않음. 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시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함.

□ 맞춤형급여 유사사업 정리 및 조정 필요.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유사사업 정리 및 조정 필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중복사항이 많고, 주거급여와 LH의 전세임대주택사업,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사업[6] 등은 시행주체가 다를 뿐 내용이 거의 일치함. 이러한 공공기관 간의 중복사업은 통합해야 함.
- 주거급여 외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도 있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고

6)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의미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함.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주거급여와 다른 사업이 상충될 경우 어느 급여를 먼저 받는지에 대한 우선순서를 정하기가 쉽지 않음.

- 주거급여가 생기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주거급여가 아니어도 기존의 도배, 장판교체 서비스 등을 주기적으로 받던 가구도 주거급여에 의존하다 보니 기존에 제공받던 소규모 보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주거환경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주거급여의 경우 시행주체, 판정기준 등이 다양하다 보니 수급자 입장에서 언제 어디에서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액 자체가 없어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수급자가 주거급여가 줄어들었다는 민원을 신청하면 어디에서 왜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몇 단계에 걸쳐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참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기존주택 전세임대(LH, 경기도시공사)

의미(목적)	저소득층이 해당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및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m2) 이하인 주택(1인 가구 60m2 이하)
사업 내용	◦ 최초 2년으로 임대하되,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최대 8천만 원 전세자금 지원(2억 원 내 추가금액 자부담 가능) - 부동산중개료 : 최대 30만 원 - 도배·장판 공사대금 : 최대 60만 원 - 전세계약, 전세권 설정, 전세권 말소 등의 경우에 법무사수수료 지원 - 보증보험 가입비용,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지원 ◦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연 1.05~2.05% 월 임대료

자료: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ico.or.kr/mobile/business/welfare/welfare04.do,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LH에서 2017. 7. 19. 인출.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의미(목적)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
대상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기초, 한부모, 차상위) - 가구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 저소득층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시도별로 기준 다름) ◦ 기타 기준 -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재비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통신비(인터넷) 월 17,600원 등

자료: 교육부. (2017b).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전달체계 개선

○ 교육급여 조사 및 급여지급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읍면동에서 조사만 담당하고 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각각 국토부, 교육청으로 이관.
- 주거급여는 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교육급여는 조사자의 현장 방문이나 현장 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므로 조사 및 급여지급 업무가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이관되어도 무방함.
- 맞춤형급여 개편 이후 교육급여의 결정과 지급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교육청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업무를 스스로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해 보임. 행정처리 등은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보임. 통합조사팀에서도 교육급여 업무 일체를 해당 기

관(교육청)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기존 수급자 가구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육청에 교육급여를 따로 신청하고 확정을 받아야 함. 이 부분은 업무 담당자가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에서 급여 관련 민원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읍면동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수급자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불편이 있음.
  - 교육청은 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전학 갈 경우 변동사항과 그 사유를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전산 오류로 인해 교육급여 지급이 지체될 경우 대부분 책임을 지자체로 돌리고 있음. 교육급여와 관련된 권한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음에도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접근편의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업무가 각 담당 부처로 이전되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의 업무량이 줄어든 부분은 있음.
- 그러나 수급자 및 신청자는 각 급여에 대해 다른 곳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대상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맞춤형복지팀의 업무조정과 인력충원 및 전문성 강화

○ 맞춤형복지팀, 읍면동의 행정팀과 업무조정 필요.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짐. 앞으로 기초보장 영역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적극적 사례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행정팀과 복지팀이 있는데, 맞춤형복지팀을 신

설하면서 복지팀의 복지업무를 행정팀으로 이관하게 된 경우가 있음. 행정팀 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맞춤형복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업무까지 추가되어 업무 과중이 생겨남.

- 특히 복지허브화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가 필수적인데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함. 업무 분장의 개선이 필요함.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신설된 맞춤형복지팀의 주요 업무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임. 그러나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기본적으로 읍면동에는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해당 권한과 결정권은 모두 시군구에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진행되면 읍면동과 시군구 간의 협력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읍면동에도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를 구분한다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시군구와 읍면동의 수급자 관리 업무 조정 및 공유 필요.

- 조사는 시군구에서 담당한다고 해도 수급자 관리업무는 시군구와 읍면동이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업무도 시군구에서 맡고 있음. 통합조사팀의 인력이 부족하여 밤늦게 일처리를 해도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됨. 읍면동에는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수급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음.

-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수급자 조사와 관리를 모두 수행하면 복지허브화로 신설된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과 비슷한 업무를 별개로 하는 것임. 현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수급자 관리뿐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까지 맡고 있는데 시군구 통합조사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읍면동 입장에서는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 됨.

- 시군구에서 통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사원 1명이 100명 이상의 수급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함.

- 시군구로 수급자 관리 업무가 이관된 후 해당 읍면동에서는 수급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함. 이렇게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 오히려 업무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음. 수급자 입장에서는 읍면동이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봄.

- 수급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자를 관리하는 인력 또는 부서도 필요함.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인력과 권한이 부족함.
  - 이는 주민센터 외에 사회복지사무소가 독립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함.

○ 복지허브화 업무 효율성 개선 필요.

- 읍면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있고 시군구에는 통합조사팀이 있음. 일반적으로 읍면동이 복지대상자를 발굴 및 접수하고 시군구는 관리하는 형태로 업무가 구분됨.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전에는 읍면동에서 복지대상자를 찾아가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 어느 단계에 있는 인력이든 해당 업무를 하려면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결국 행정업무의 단계만 복잡해지고 업무효율성은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후 읍면동은 접수 창구가 됨. 실제 조사·관리는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급자의 상세 내용에 대해 읍면동은 잘 알지 못함. 수급자 관리업무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수급자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빠른 처리가 어려워짐.

○ 맞춤형복지팀의 전문인력 증원.

- 복지허브화 정책의 의도와 순기능은 이해하지만, 읍면동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팀(맞춤형복지팀)의 구성을 진행하다 보니 중앙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발생함. 특히 원래부터 인력이 부족한 곳은 적은 인원으로 행정팀, 복지팀, 맞춤형복지팀을 모두 꾸려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복지허브화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업무에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적극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업무 조정이 필수적임.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젊은 여성이 많다 보니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결원이 자주 발생하기도 함. 결원 인력을 대체하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가 많아서 2018년까지 복지허브화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기관 및 담당자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인력 충원과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야 함.

- 복지허브화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공공서비스가 민간의 성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실적내기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자 중복 등의 문제도 나타남.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함.

- 공공 부문은 수많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태임. 공공서비스의 안정 이후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원은 공공에서 부담하고, 심층상담 및 심리치료는 민간 전문가 영역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지역 특성 고려한 복지허브화사업 내용 보완

○ 지역 특성 고려한 복지허브화 사업 설계 필요.

- 읍면동 역시 중심동과 일반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동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시행함.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고 전담팀을 꾸릴 여유가 있는 중심동의 만족도는 높지만, 일반동의 경우 관심이 낮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음.

-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연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필품 및 부식 제공 등 단순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맞춤형급여 담당 기관과 시군구 및 읍면동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 필요

○ 맞춤형 급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의 실시간 상호연계 필요.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교육급여의 경우 행복e음에서 정보를 전송했는데 교육청 시스템(나이스)에서 수신이 안 되거나 개인정보 변경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

-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교사 중 교육급여 관련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 시스템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상이함. 교육행정과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시스템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함.
- 업무 시스템이 다른 것은 국토부 및 LH도 마찬가지임. 동일 대상에 대해 각 기관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 서로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문화적·관계적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와 통합(선별적 시설보다)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수급자는 경제적 욕구 이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관계적 욕구가 있음. 금전적인 지원 외에 지역사회와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접근방법을 장기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함.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저소득층 및 수급자 스스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차원의 복지사업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임.

제 3 장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제1절 자활지원제도 개요
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3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제1절 자활지원제도 개요[7)]

1. 자활사업의 개요

□ 자활사업의 목적

○ 근로능력자의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이 목적임(보건복지부, 2017c, p. 3).

□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보건복지부, 2017c, pp. 45-139).

○ 자활사업의 종류는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사업,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8)]

○ 자활사례관리는 자활계획의 초기과정인 Gateway 과정부터 이후 마지막 과정인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자립을 목표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그림 3-1] 참조).

- Gateway과정이란,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초기(1+2개월 이내)에 자활참여자의 상담, 교육, 자립경로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

7) 자활사업에 대한 제도 소개는 2017년 자활사업 안내(I) (보건복지부, 2017c)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음. 2014년 자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 자활사업 안내(I)를 참조하기 바람.

8) 기존의 자활장려금 및 자활소득공제는 2016년부터 폐지되었음(보건복지부, 2017c, p. 131).

〔그림 3-1〕 자활사례관리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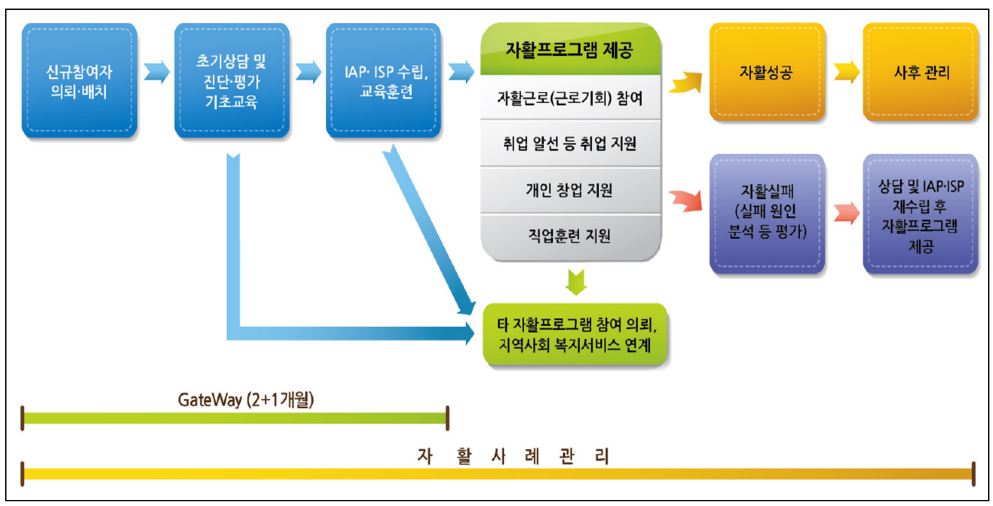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자활사업 안내(Ⅰ). p. 46.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임.

- 자활근로 유형은 자활능력 및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함.
-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고, 사회서비스형은 현재보다는 향후에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유형이며, 인턴·도우미형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단이며, 근로유지형은 현재의 근로와 자활의지를 유지하는 사업단을 의미(〔그림 3-2〕참조).
- 근로유지형 사업은 전체 사업의 20% 미만, 나머지 사업은 80% 이상으로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함. 사업비 지출한도는 사업 유형에 따라 5% 이하에서 30% 이하까지임.
- 자활근로 시행은 시군구 직접 시행과 민간위탁을 병행할 수 있음.
- 자활근로 대상자의 참여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다른 유형으로 전환 시 60개월까지 참여 가능(근로 유지형은 연속 참여 기간 제한 없음).

〔그림 3-2〕 자활근로사업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자활사업안내(Ⅰ). p. 59.

○ 자활기업 지원사업은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지원 방식은 자활기업 설립과 운영 및 판로개척을 지원.

-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사업은 자활역량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인 사람(70점 이상인 사람)을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일반 시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그림 3-3〕 참조)을 의미(고용노동부, 2017, p. 17).

※ 자활역량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사람을 자활센터에 의뢰.

〔그림 3-3〕 고용노동부 취업우선지원 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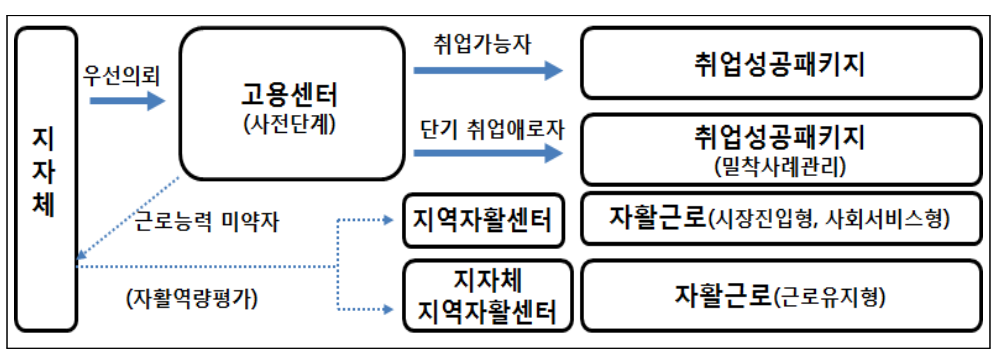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17).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p. 14.

○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이 있음(보건복지부, 2017d, pp. 5-52.).

-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내용에 따라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으로 분류.
  - 희망키움통장(I)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매달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 10만 원과 정부 지원금(월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약 33만 원 정도)을 매칭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희망키움통장(II)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에게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과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 원을 매칭하여 저축하게 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내일키움통장은 신청자의 최근 1개월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가 성실한 경우에(월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본인 저축액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과 정부지원금(1:1매칭) 및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 원)을 함께 저축하여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의무 참여자와 희망 참여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의무참여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보건복지부, 2017c, p. 12).

○ 의무참여자 외에 희망하는 자: 자활급여 특례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희망자.

-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특례수급가구원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와 이행급여 특례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차상위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대상자 중 일반시설 생활자.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대상자 선정과정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 및 조건유예 결정, 확인조사 및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임([그림 3-4] 참조).

[그림 3-4] 선정 및 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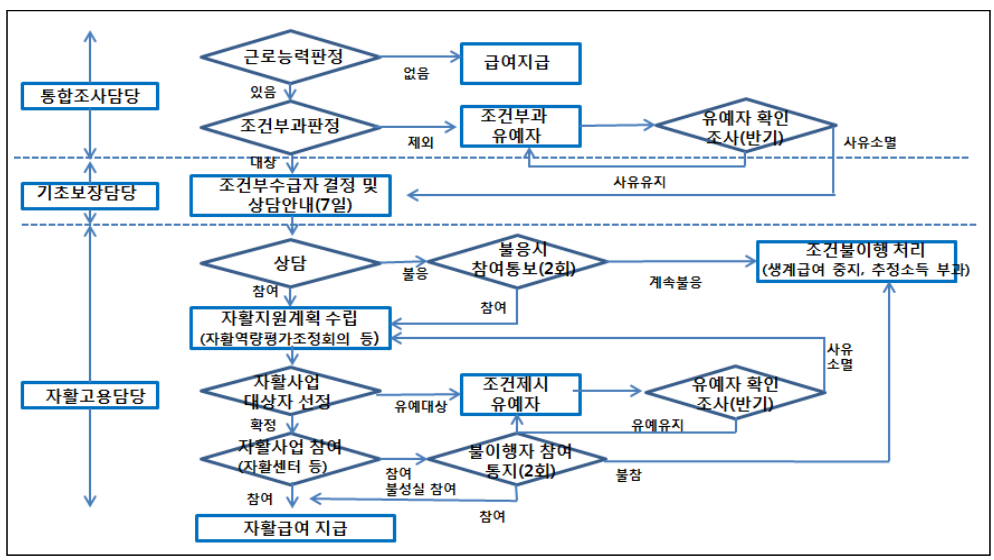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자활사업안내 (I). p. 11.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고용팀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 및 조건부과 내용을 결정함.

○ 자활역량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사람은 자활근로, 자활기업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 등 자활근로 사업에 배치함([그림 3-5] 참조).

[그림 3-5]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

자료: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자활사업 안내(Ⅰ). p. 32.

3. 전달체계

□ 자활지원 사업 업무 관련 절차는 서비스 발굴 및 신청·접수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징수·이의신청→자활사업 참여로 구분할 수 있음([그림 3-6] 참조).

○ 서비스 발굴 및 신청·접수는 읍면동 대민서비스 창구에서 담당함.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는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담당하며, 근로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함.

○ 보장결정과 통지, 급여지급, 징수 및 이의신청 등은 시군구의 급여종류별 보장팀에서 담당하며,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고용팀에서 담당.

○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역량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 의뢰하고 70점 미만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센터에 의뢰함.

〔그림 3-6〕 자활지원제도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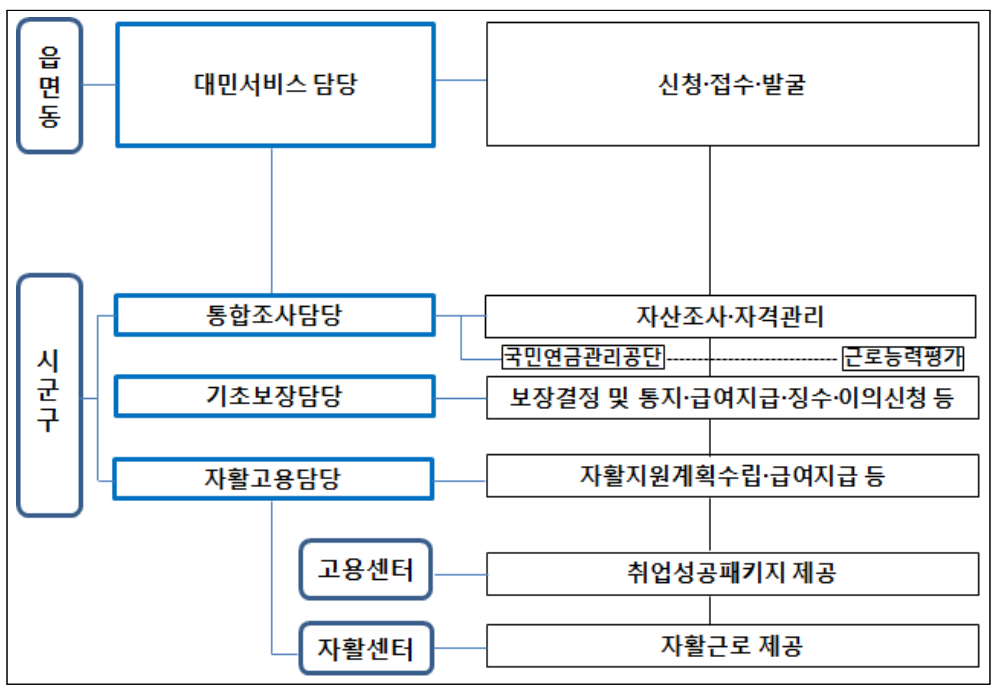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pp. 8-9;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자활사업안내(I). p. 11을 바탕으로 작성.

제2절 자활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1. 대상자 발굴과정

□ 지자체를 통한 연계가 대부분을 차지함.

○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기초상담 후 사업 연계.

○ 통합조사, 취업상담사 등을 통해 발굴 의뢰.

- 취업상담사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DB를 정리하여

자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

○ 희망복지팀의 복합문제 사례관리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도 있음.

□ 본인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배치.

○ 주로 생계곤란을 이유로 찾아오는 민원인 중에서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자활 참여 권유.

- 이웃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를 신고하여 발굴하기도 함.

○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발굴.

-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만을 위해 별도로 홍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급여를 함께 홍보하고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사업 종료 후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기도 함.

□ 유관기관 및 시설에서 연계하는 경우도 있음.

○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등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연계.

○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각지대 발굴,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연계.

-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안내함.
- 통합조사를 통해 자산조사와 초기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취업성공패키지로 유도할 것인지, 자활사업 참여로 유도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자활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선택함.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와 자활 중 선택할 수 있음.

○ 수급자에게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부분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임.

- 특히 청년층은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음. 즉 중위소득 기준, 근로능력 기준 등을 충족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홍보는 주로 지역자활센터 홍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자활로 바로 연계가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해서 찾아왔다가 자활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며, 노숙자 시설 등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접근도 다수 있음.

□ 지역자활센터는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자활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 발굴과 관련하여 실제로 권한이 별로 없음.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 판정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연계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임.

○ 참여자 발굴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각 기관은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힘든 상황임. 자활 연계와 수급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부족함.

- 수급자 발굴에 도움을 주거나 연계를 해 주면 해당 기관의 실적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이러한 실적을 인정하는 평가 시스템은 없음.

○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도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므로 자활 실무자는 수급자 발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2. 대상자 선정과정

□ 선정과정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진 대상자가 부재하다는 것임.

-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신체적 만성질환 등의 문제를 지닌 대상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 대상자들은 자활 의욕과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배치되고도 참여 불이행으로 자활급여가 중지되는 사례가 많음. 배치→불이행→배치가 반복됨.
- 근로 의욕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특성에 맞는 대상자 선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 자활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불이행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성실하게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줌. 만성질환, 정신질환 보유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함.
-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급여가 중지되어도 의료·주거 급여 등은 유지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중지가 조건이행을 촉구하는 자극이 크게 되지 못함.

○ 적극적으로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매우 낮기 때문임.

-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당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일반 수급자에게 적극적으로 자활을 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고학력 청장년층 수급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활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인시킬 수 있는 기제가 거의 없음.
- 기존 자활참여자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만을 이유로 수년간 자활참여자로 되어 있을 때 마땅한 자활 독려 방법이 없음.
- 자활급여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은 자활에 참여하고 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음.

○ 자활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가 생계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활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능력 판정 거부, 상담불가 대상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 통보됨.
- 근로능력판정을 받는다 해도 대상자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함.

○ 자활참여자 중 무단결근, 음주 등으로 조건불이행하는 경우 급여가 중지됨.

- 자활급여는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움.

○ 고용센터 등의 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건부 수급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자활사업에 연계되어야 함. 이 경우 자활은 선정과정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취업지원을 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활센터의 문제

- 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시스템임.
  -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우선 배치되고 있어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활에 한계가 발생함. 근로능력 평가 점수가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담당 인력 부족.
  - 수급자 발굴을 통해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 3~4명 수준으로 자활사업운영과 조건부수급자 관리가 매우 어려움.
  - 사소한 민원처리에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상담자도 많음.

□ 근로능력판정 문제

○ 조건부 수급자들이 탈수급하지 못하고 자활에도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능력판정 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판정을 위해 의학능력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것임.

○ 근로능력판정 기준이 의학적 기준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의학적 평가 항목은 주로 나이, 건강, 병원진단 이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이가 젊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일자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음.
- 반대로 활동능력평가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기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의지만을 가지고 점수를 높게 산정하기도 함. 이는 향후 재판정을 필요로 하여 민원 발생이 많은 편임.
-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상자가 스스로 증상을 인정하지 않아 의사의 소견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음.
- 증상을 인정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치료라는 의사 소견이 기재되지 못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복합적 증상이 동반된 중증질환, 만성질환 등은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수술 이후에 제대로 된 판정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수급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기부담금이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근로능력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판정에 대한 민원은 다수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자체가 어려움. 근로능력판정 담당자의 고자세로 세부적인 업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수급자뿐 아니라 자활 담당자 또한 근로능력판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음.

○ 사각지대 발굴로 자활에 참여하게 된 대상자는 그동안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타 서비스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참여한 대상자 중에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

독,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음.

- 이 대상자들 대부분은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없음. 그 결과, 반대로 자활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음.

○ 현재 수급자 판정 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음.

- 대상자가 그동안 근로능력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일단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한시적으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 후에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고 조건부과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됨.
- 현실적으로 알코올 중독, 노숙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상자의 경우 치료 과정 없이 자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힘듦.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활 참여자보다 조건제시유예자가 더 많음. 조건제시유예가 되면 일주일 단위로 안내를 통해 병원 방문과 진단 등을 진행해야 함.
- 그러나 평소 의료 기관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던 대상자가 스스로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진단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음. 의료 기관을 방문한다고 해서 진단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님. 이렇게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결과는 불이행등록임.
- 조건부과유예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활참여 대상자가 질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줄고 있음을 의미함.

○ 근로능력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질병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없는 홀몸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대상자 또한 진단서가 없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됨. 실무자가 의료기관까지 동행하여 진단서를 받아도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질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 이 모든 과정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음.

□ 대상자 특성의 변화

○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가 선별되고 난 후, 나머지 대상자가 자활에 참여하여 자활참여자의 근로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 갈수록 자활 참여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년층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더 많이 희망하기 때문임. 자활에도 청년층 대상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취·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제가 필요함.
- 자활 참여에 나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65세 이상 참여자도 늘고 있음. 이러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활 참여가 더욱 어려움.
- 이러한 문제는 이미 자활참여자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어서 자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탈수급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로만 구성해서 창업을 시키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와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를 함께 구성하여 창업을 시킬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음. 대부분의 업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나 회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활을 통한 창업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결국 근로능력미약자가 많이 속한 사업단은 시장경쟁에서 낙오되고 구성원 내부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습득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함. 이러한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 자활 참여자 스스로 근로능력미약자를 수용하고 업무 강도에 따른 업무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농어촌의 경우 자활참여자 대다수가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많음.

○ 근로의욕이 있는 대상자를 설득하여 자활에 참여시키는 것은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근로의욕이 약하더라도 꾸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근로의욕과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담할 수 없음.

- 자활의 근본적인 역할은 후자에 가깝지만 성과를 강조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음.
-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격증 취득, 심리 치료 등이 효과가 좋음.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시장진입형에만 적용하고, 사회서비스형에 대한 성과 평가에는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 동기부여, 사회적응 등의 기준을 적용한 정성평가가 요구됨.

○ 자활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참여 형태의 개발,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근로능력이 충분한 자활 참여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활사업보다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대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활 참여자는 그들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실무자의 근로환경 문제

○ 실무자들은 반말, 욕설,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범죄 이력이 있는 대상자, 만성적인 음주 문제를 가진 대상자와 만날 경우 위협, 폭언, 폭력 등 안전상 문제에 대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상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거의 없음.

- 이러한 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실무자의 정신건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이 마련되어야 자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관련 개선 방안

○ 신체적 능력, 심리정서적 상태, 사회관계 등이 고려된 포괄적인 근로능력판정 체계가 필요함.

○ 실질적으로 자활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의 간소화가 필요.

-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중지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
- 위와 같이 단기간에 호전되기 힘든 질환들은 근로능력판정 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근로유지형 참여로 적극적으로 연계.
- 특히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할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질환이지만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근로능력판정 체계에서 예외조항으로 판단할 필요.
- 의사의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수급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로 조건제시유예나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물리적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찾아가는 진단 서비스를 수행할 필요도 있음.

○ 지자체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자활참여자를 위탁하기 이전의 참여자 선정과정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활 참여 이후 발생하는 조건유예자 등의 비율을 감소시켜야 함.

- 자활센터 사례회의를 통해 자활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자활 외의 지역사회 자원에 우선 연계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
- 기초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권역으로 묶어 자활참여자 선택의 다양성, 근로내용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
- 참여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다각화,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3. 자활사업 내용

□ 자활사업 내용의 적절성

○ 중고령 자활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자활근로 사업 또한 공익형, 근로유지형이 수익형, 시장진입형에 비해 많음.

- 단기간에 참여자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공익형, 근로유지형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시장진입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고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임.

○ 경쟁력 있는 자활에 참여하기에 부적절한 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진입을 강조하는 현행 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에 따라 자활 참여자의 특성이 변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 참여자 보호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함. 여전히 자활은 변화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장 진입과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가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근로유지형 또는 향후 실시될 시간근로제가 확대되어야 함. 이러한 사업의 확대가 결국 참여자를 유도하는 역할도 할 것임.

○ 젊은 층 대상자가 자립을 목표로 참여할 수 있는 수익형의 개발 또한 필요함.

- 이러한 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가능하므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이 자활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짐.
  - 그러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가 자활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음.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은 수정이 필요함.

-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참여자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자를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됨. 그러나 사회서비스형은 시장진입형에 비해 급여가 적고, 매출에 따른 각종 수익금도 적게 분배됨.

- 그 결과 사회서비스형에서 자활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무량도 많은 참여자는 시장진입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참여자에 비해 적은 급여와 처우를 받고 있음.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창업보다 취업에 무게를 두어야 함.

- 자활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창업보다 취업이 더 유리함.
- 현재 자활사업은 창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취업을 강조하는 기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서 자활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함.

○ 자활참여자가 어떠한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결과적으로 다양한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가 시장진입형에 배치되거나, 반대로 근로능력이 우수한 대상자가 사회서비스형에 배치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함.
- 근로능력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근로의욕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역량강화, 자립준비강화 등으로 구분할 필요.
- 근로 의욕과 근로 능력에 맞는 단계별 일자리를 개발할 수도 있음.
  - 장시간 근로가 힘든 대상(자녀 돌봄 및 간병, 근로능력미약자 등),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알코올중독, 만성질환자 등), 짧은 기간 조건부과 대상(군복무 신청, 복학 예정자 등) 등이 있음.

□ 사례관리 대상자의 특성

○ 사례관리 대상자는 대부분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사례관리의 주요 대상은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질환,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그 외에 신용불량 및 회복이 필요한 자, 주거가 불안정한 자(노숙자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출소자 등이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근로의욕이 미약한 참여자를 자활사업에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임.

○ 근로가 가능함에도 스스로 자활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근로능력이 미약함에도 자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 자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부담이 되기도 함.

- 근로의욕이 미약한 경우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함양하고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
- 사례관리 대상자는 대부분 자활사업에서 배척당한 경험이 있음. 생계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급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자활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사례관리 운영과 개선방안

○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월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함. 참석대상은 센터장, 사례관리사, 자활팀장, 자활담당, 자립지원상담사 등임.

-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자원에 연계하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함. 필요한 경우 지역생활심의보장위원회 사례 안건으로 상정함.

○ 현장에서 복합적인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관리 전담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1명의 전문가가 게이트웨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모두 맡고 있음.

○ 안정된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사례관리 인력은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

○ 기관 내 실무자들이 사례관리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해야 함.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기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함.

4. 참여자 사후관리

□ 자활참여자 상담

○ 참여자의 요청이나 안내할 사항이 있을 때 상담이 이루어짐. 대부분 사례관리 담당자와 자활 참여자는 수시로 연락하고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상담이 가능함.

- 주된 상담내용은 참여하는 사업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 자활에 참여하는 동료들과 대립 및 마찰이 생길 경우, 가정불화 혹은 자녀양육 관련 문제, 참여기간 만료 혹은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등이 있음.
- 초기 상담에서는 근로의욕과 능력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짐. 참여 이후에는 욕구에 따라 물질적 지원, 외부 서비스 연계, 구성원 집단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자활 참여기간 종료와 참여 제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담당자는 그 이유와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함. 자활 참여 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자활 외의 일자리 연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유도함.

○ 자활 참여자 간의 마찰과 대립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음. 심각하지 않은 문제일 때는 상담을 통해 서로 맞춰가기를 요구함. 갈등이 심각해지면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 정도가 심한 참여자를 다른 사업단으로 이동시키거나 사업에서 탈락시키기도 함.

- 참여자 간의 대립은 보통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되어 있음. 업무강도와 상관없이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갈등이 있음. 담당자는 주로 업무 분담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함.

○ 주거 불안정과 관련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음. 주거안정 문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있으며 경제적 안정은 자활급여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경제적 문제는 자산형성지원사

업 가입을 독려하여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대상자는 통장관리와 관련하여 상담을 많이 하게 됨.

○ 자활 참여에 따른 생계급여 변화와 관련하여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기간 이상 적극적으로 자활에 참여한 경우, 소득공제 비율을 해당 기간 동안 증가시키거나,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자활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참여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자의 욕구가 다를 수 있으나, 근로유지형의 경우 사업 유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에 맞춘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움.

○ 분기별로 자활지원계획(ISP) 수립을 통해 현재 참여자의 욕구 파악과 향후 계획을 세워 참여자의 변화를 점검함.

-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 사례관리자가 참여자의 주변 지지체계 및 관계망을 탐색하여 자원 요소를 발굴하고 강화.
- 위기 상황에는 수시로 유관기관과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자활 참여 종료 이후 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관리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음. 현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만 해도 인력이 부족하며, 사업 종결 이후에는 수급자도 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

-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지속적 확보, 참여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실제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근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음.

□ 조건불이행과 급여 중지

○ 조건이행 여부는 자활계획수립을 위한 상담, 자활사업 참여기록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으로 판단함. 조건불이행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계도 기간을 두고 참여를 안내하거나(3회) 상담을 유도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담에 불응하거나 자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서류 미제

출 포함), 지속적인 근무태도 불성실,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동료 간 갈등으로 인한 다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되고 생계급여가 중지됨.

- 자활에 참여하기 힘든 질병이 있는데 근로능력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질병 치료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조건제시유예를 검토함.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근로능력판정 진단을 지원하기도 함.
  - 특히, 1인 가구, 미혼모·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등의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거의 모든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조건불이행 처리가 쉽지 않음.

○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점검회의, 통합사례관리회의, 사례관리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각종 자료를 통해 점검하고 파악함.

- 급여 중지 결정은 보장기관이 갖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는 지침에 의거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 종료에 대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조건불이행이 빈번하게 발생함. 조건불이행 통보 및 사업종결 진행 시 대상자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

○ 자발적 조건불이행의 가장 큰 이유는 생계급여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임.

○ 조건불이행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의 역기능으로 볼 수 있음.

- 맞춤형 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생계급여만 중지되는 것이 큰 타격이 되지 않는 수급자가 많음.
- 그 이유는 자활 급여 수준이 매우 낮고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적기 때문임. 조건불이행 판정을 받고 생계급여가 중지되어도 노동 강도가 약한 시간제 일자리 정도로도 생계급여 수준은 회복이 가능함. 그 결과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여겨짐.

○ 수급자 역량이 자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영향을 줌. 지역자활센터를 예로 들면,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활 참여자

가 노동현장에 참여해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역자활센터는 점점 이러한 참여자를 보호하는 것에 자원을 활용하고 자립이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없음.

-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증가하고 실제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수는 감소하였기 때문임.
-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있으나, 자활급여가 낮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참여자는 자활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부정수급 문제

○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제시유예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환수하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일용직 근로자에게 부정수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구조임. 이러한 대상자들 모두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며, 기타 현물 급여까지 고려하면 상당 금액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담당자가 매일 확인하고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음.
  - 과거에는 이런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 제도가 사라짐. 자진 신고한 것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으므로 발굴이 어려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한다고 해도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
- 사전에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미신고로 인해 추후 환수가 발생하면 소득도 줄고, 환수금으로 인해 자활급여도 줄어 생활상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안내함.

  -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어 지역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 환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해도 대부분 징수 제외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처벌효과가 떨어짐. 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 환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구성할 필요.
  - 그러나 대부분 노동 현장에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고,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 등이 실명으로 처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부정수급 이슈는 줄어들고 있음.
- 급여 신청 또는 소득재산 변동신고를 할 때 소득이 없음을 자필로 받고자 노력함. 이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자녀의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가구는 소득 증가로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소득활동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후 자활사업 참여를 유지함.

- 대부분 가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활참여자는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함.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수급 가능함. 생계급여 외 급여를 수급하면서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음.

○ 부정수급 신고는 아니지만, 자활참여자 간의 마찰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경우 참여자 간의 화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활사업 외에 소모임 활동 등을 권장하기도 함.

○ 취업을 통한 자활보다는 기초보장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조건제시유예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직업훈련(1년 과정)을 수료하고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력으로만 관리, 학력으로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편입하여 2~3년간 재학, 학위 취득이 쉬운 전문대학에 편입하는 등의 사례임.

○ 자활참여 중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자활사업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고발성 민원을 받기도 함. 음주, 노숙, 무전취식 등의 문제가 그 사례임.

○ 자활 외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고용주가 수급자와 합의하에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수급자와 관계가 악화되자 부정수급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음.

- 청년층 수급자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사례가 있음.

○ 그 외에 사실혼관계 부정, 주소지 이전, 타인 명의로 재산 등록(주로 자동차), 위장 이혼,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사례가 있음.

5. 성과평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현재 자활사업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에 치우친 경향을 보임.

○ 성과는 크게 탈수급과 취·창업으로 구분되는데, 자활 목표가 탈수급과 취·창업임은 맞지만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가 많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움.

- 조건불이행 대상자가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조건을 이행하거나, 근로능력 미약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등도 자활 사업의 성과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병행되어야 함.
-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참여자의 연령도 매우 높고 취·창업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을 세분화해야 함.
- 탈수급과 취·창업 외에 기관의 사례관리 건수, 조건부 수급자의 사회 참여율 등의 성과도 평가 지표로 포함해야 함.

○ 참여자 대비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은 기관에 오히려 더 불리한 체계임. 이 때문에 저소득 밀집지역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참여자를 선별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 참여자가 많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함.

- 현행 평가 체계로 인해 자활참여자 중 탈수급 비율이 높지만 평가 점수는 낮

거나, 반대로 탈수급 비율이 낮지만 평가 점수는 높은 기관이 생기고 있음.

□ 지역 특성 또는 기관의 고유 업무를 고려한 평가 필요.

○ 지역자활센터는 기관별 유형(확대형/표준형/기본형)에 따라 실무자의 인원이 다르고 그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함.

○ 기관 유형은 기관장 혹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근로능력 등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기관이 어떠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과평가 체계 또한 달라져야 함.

-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역자활센터별로 성과 목표와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 2012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만성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자활 대상자로 판정받았지만 특별한 이유로 자활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광역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했음.

-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해당 대상자들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됨.
- 자활 대상자 중에는 분명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있음. 그렇지 못한 대상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자활대상자의 능력이 떨어지는, 즉 평균 수준이 내려가는 상황이 됨.
- 기관평가를 계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가대상인 지역자활센터는 성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예전처럼 자활사업에 제대로 참여하기 힘든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평가를 위해 매번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개발하면 1~2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폐쇄하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1번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 기관은 매번 새로운 시스템까지 구축하면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지 의문임.

6. 자립으로의 이행 가능성

□ 자립 가능성

○ 대부분의 자활 참여자는 기초보장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탈수급하는 것에 비해 낫다고 판단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기보다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행이라고 판단함.

- 유급 노동이긴 하지만 자활 참여 자체가 일종의 복지 수혜, 즉 더 이상의 퇴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자립에 대한 의지 부족, 신체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가진 조건부 수급자는 더욱 자립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되면 수급이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음.
-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탈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일자리 외에도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임.
- 근로빈곤층의 공통적인 문제는 의료, 주거, 교육, 불안정고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을 지적할 수 있음. 자활 참여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그러나 일시적인 문제로 수급자가 된 경우 자활의욕이 있기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하여 자립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수급자에 국한됨. 이러한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자활을 통한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보충을 받아도 탈빈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자활기업 등 창업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 또한 보조금 지원 기한이 끝나면 수익성이 떨어져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 가구 구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자활참여자 외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자립이 어려움.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 되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면 생활여건이 좋아질 수 있지만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

원이 있는 경우 자립 가능성은 낮아짐.

- 이 문제는 자활참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가구에서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을 키우는 것이 힘든 현실임. 자활급여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기초보장수급자, 근로능력미약자 등은 사례관리를 통해 제한적인 영역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역량강화 달성 시 자립을 위한 단계로 진입해야 함.

○ 현재 자활제도에 성과급 체계가 있기는 하지만, 생계급여로 충당되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여도가 아닌 참여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함.

- 근로 여부와 무관한 자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을 통한 자활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자활 참여자는 현재 자활지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급여를 받기 위해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자활시스템 내에서는 당연한 결과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알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정책결정자 혹은 정책설계자에게 변화를 위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일에 대한 태도

○ 현실적으로 자활참여자 중에는 자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임. 근로유지형과 같은 사회참여에 의미를 두는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자활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취업을 통한 자립을 추구한다면 자활도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성격으로 변해야 하지만,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면 자활이 추구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실무자 입장에서도 자활은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등을 가진 대상자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자활을 통해 근로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참여자도 각자의 욕구를 갖고 있기 마련인데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활사업이 다각화된다면 좋을 것임.

○ 자활에 적합한 대상자는 근로의욕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떨어지거나,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대상자임. 이러한 대상자의 경우 참여기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단기 참여의 경우 계속 일을 해 왔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실업했을 때 재취업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활용이 가능함.
- 중기 참여의 경우 가구 사정으로 즉시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가능한 대상자를 참여시켜야 함.
- 장기 참여의 경우 만성적인 건강 문제,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를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에 참여시킨다는 관점에서 자활에 참여시켜야 함.

7. 전달체계

□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이후 전달체계의 변화.

○ 조건부 수급자의 초기 참여 시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자활역량평가를 의뢰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자활참여자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장으로 배치할 수 없음.

- 조건부 수급자 의뢰 권한이 시군구가 아닌 고용센터 소속으로 전환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우선 배치됨.
-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는 근로미약자(중고령층, 만성질환 보유자 등), 중증장애인 등의 대상자가 의뢰되어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인 자립과 자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나 자활의지에 상관없이 고용센터에서 우선 상담을 받다가, 근로능력미약자 등은 지역자활센터에 배정되어 다시 자활상담을 하게 되어

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최소 2~3개월을 소비하는 문제도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는 조건부 수급자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전략을 취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음.

- 특히 많은 대상자가 자활사업 내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자립이 목표임을 상기시키고 있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 중 상당수가 다시 자활로 돌아오는 구조적 모순도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교육·훈련 또는 구직활동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자활에 참여하게 되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참여자가 발생함.

□ 자활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간의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참여자 활동 정보가 자활 담당자에게 연계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 간의 단절로 인해 가장 힘들어지는 것은 자활 참여자임.

- 또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이 연계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참여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음(복지쇼핑).

○ 취업성공패키지 실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 이런 경우 대상자를 인계받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쉽지 않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해 외부교육과정 개설 시까지 자활사업 교육과정에 한시적으로 위탁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런 경우는 자활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는 대상자의 취업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중고령층이나 저학력 대상자, 근로능력미약자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 자활 또한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시킨 후 취업이 가능하여 교육 연계가 필요하면 자유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연계할 수 있었으면 함.

○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적을 위해 양질의 취업보다는 일용직이나 단순 일자리에 대한 취업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또한, 교육을 받는 중 식사도 제공되고 구직 활동만 증명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고취되기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가장 심각한 것은 자활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었다가 다시 자활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위한 기업일자리 연계를 제도화하거나 일자리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함.

□ 시군구-읍면동 자활업무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와의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센터 취업상담사의 고유 업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와의 연계는 취업상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자활사업 참여 시 수급자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매우 복잡함.

- 자활 참여는 '급여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선정을 위한 적정성 조사는 시군구 통합조사팀 → 조건부 수급자 결정 후 자활담당 → 최종배치 후 지역자활센터 또는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할 자료가 많지만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음. 특히 고용센터에서 의뢰한 경우 참여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의 변화를 늦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자활업무 담당자와 지역자활센터 간에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와의 연계는 거의 없음.

○ 초기에는 시군구 자활업무 담당자와 고용센터 관계자 간 위탁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통합사례관리회의를 진행하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음.

- 각 기관별 업무프로세스를 상호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

록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여 참여자를 위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중복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음.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대상자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수급자의 급여 체계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자체로 문의하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 4 장 개선 방향

제1절 맞춤형 급여 개선 방향
제2절 자활지원제도 개선 방향

4 개선 방향

제1절 맞춤형 급여 개선 방향

1. 급여의 보장수준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보장수준 강화

○ 현재 수준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 수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생계급여의 경우 지역별 지출 내용과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광역시 이상은 급여수준 상향조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임차료 수준으로 보장하기를 제안함.
※'16년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의 86%임(민간임차가구인 경우)(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2017, p. 14).

○ 지역별 지출 실태 및 지출수준(물가)을 고려한 생계급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지역 구분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구 특성이나 인근 주변 환경에 따라 지출 영역과 물가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것임. 제도의 간결성을 위해 현재의 생계급여 수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지자체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금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주거급여 인상과 기준임대료 조정 및 교육급여 인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보건복지부 등, 2017), 위의 개선사항을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수급자 선정기준

□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점진적 폐지

○ 현재의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어려우며,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으나 진료기록이 부재한 경우에는 근로능력자로 판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은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비수급 빈곤층 보호 및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고 점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도 점진적으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내년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에 있으며 2019년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킬 예정에 있음 (보건복지부 등, 2017, p. 60).

○ 이 외에도 부양의무자 판정 시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확인소득 부과방식 기준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집행상 어려움이 있음.

3. 급여 효과성

□ 맞춤형 급여는 취약계층에게 최저한의 생활보장이 목적이며, 더 나아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자활을 통한 탈수급이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음. 탈수급의 수단은 근로유인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탈수급이나 자활의 경우 맞춤형 급여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활의 경우 시장특성과 경기 변동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 설계만으로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자활의 경우 근로유인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경우, 특히 근로미약자나 근로의욕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예, 사례관리)하거나 관련 사업(예, 근로 유지형)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탈수급 이후의 안전망이 필요함.

○ 탈수급 이후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시 빈곤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담당기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통일된 지침 배부를 통해, 업무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수선유지급여의 대상자 선정에서 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급권이 변경(예, 급여 중단, 이사)되더라도, 수선유지급여는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교육급여와 유사한 사업 및 주거급여와 유사한 사업은 조정 및 정리가 필요함.

- 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와, LH의 전세임대주택사업과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사업은 주거급여와 유사.

4. 전달체계

□ 맞춤형 급여 전달체계

○ 수급자의 접근 편의성과 급여 전달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을 제안함.

- 수급자 입장에서는 접수 및 급여지급까지 한곳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편리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업무를 조사에서부터 급여지급까지 각각 담당 기관인 교육청과 국토부로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복지허브화 관련 전달체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맞춤형 복지팀, 읍면동의 행정팀과 업무조정 필요

- 복지허브화로 인해 시군구 통합조사팀과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간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여 업무가 중복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각 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복지팀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 읍면동의 복지팀 업무가 행정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행정팀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맞춤형복지팀은 사례관리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나 전문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은 채로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임.

○ 읍면동의 규모와 도시 농촌 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허브화 사업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함.

- 읍면동 간 인력 규모가 차이가 나며,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임.

○ 행복e음, 나이스, 국토부 및 LH의 정보시스템, 읍면동 행정시스템 간 관련 정보의 연계가 필요함.

5. 기타

□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사회에서 배제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지원과 및 관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제안함.

○ 자격기준을 통해 시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 또한 시설 이용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제2절 자활지원제도 개선 방향

1. 자활사업 목표의 재설정

□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이 보호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

○ 대상자의 자활 의지와 근로능력 수준이 크게 낮아진 시점에서 자활의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 자활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함.

- 현재 자활은 실무자들이 기피하는 사업이 되고 있음. 이전과 같이 자립을 강조하고 탈수급, 탈빈곤을 목표로 하기에는 운영이 매우 힘들기 때문임.

○ 자활사업으로 유입의 폭이 넓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수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립이 가능한 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탈수급하고,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함.

- 자활사업은 참여 기간을 기본적으로 36개월로 제한함. 그러나 참여 유형 변경, 희망키움통장 또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탈수급 후 1년 내 실직하면 재진입 등 많은 단서 조항으로 참여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음.

○ 자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탈수급, 탈빈곤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이유는 대상자가 가진 자원이 질적, 양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힘든 조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자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오류가 있음. 자활에 사용하는 예산의 80% 이상은 인건비이고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가 되지 않음.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도 사업비는 부족함.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

- 자활사업을 통해 매출을 올리면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수급자의 경우 성과급을 받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함. 기

관 차원에서는 자활을 통해 매출을 늘리면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성과를 얻지만, 참여자의 생활수준은 나아지는 것이 없음.

○ 차상위계층 자활 참여자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함.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함.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참여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르고 노동 강도도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는 자활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모두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 이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

○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수급자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을 시도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참여도가 낮음.

○ 자활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처의 동시 관리 속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음.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고용복지의 기조는 자활보다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양상임.

- 보건복지부와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포럼에서 쟁점이 되는 근로능력판정, 대상자 관리, 지역자활센터의 권한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언급되었으며, 대부분의 대상자가 탈수급 및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많은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음.
- 계속해서 수급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활의 성공 가능성을 계속해서 진단하고 동시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기초생활보장이 최근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가장 큰 이유도 탈수급 유인 부족 문제임.
- 자활에 대한 연구와 담당 부처의 개선 의지 등이 제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담당 부처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장에서 자활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시급히 답을 내려야 함. 근로 유지와 보호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자립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취합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2. 지역자활센터의 권한 강화

□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자원연계 권한 부여

○ 자활 참여자를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시키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정작 자활 참여가 힘든 대상자에게 다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대상자를 자활에 참여시키는 것만 할 수 있음. 그 결과는 자활 이행, 불이행, 유예 등이기 때문에 유예자만 계속 증가하고 있음. 지역자활센터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은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판정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있음. 이 경우 조심스럽지만 실무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해결 방안의 하나로 강구할 수 있음.

- 과거 지역자활센터에는 '복합사례관리회의'라는 절차가 있었음. 이 회의에서는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례관리 안건으로 상정함. 해당되는 대상자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사례관리 안건으로 상정되면 지역자활센터장, 자활사업팀장, 자립지원상담사, 사례관리사, 게이트웨이 담당자 등이 모여서 대상자에게 어떠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함.
- 동시에 지역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이 대상자를 안건으로 올림. 해당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서 자활에 참여하였으나, 실무자는 적응이 어렵다는 평가를 했고, 다른 자원을 연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이 대상자를 일반 수급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함.

- 이 과정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됨.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생활보장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역자활센터와 읍면동·시군구 담당자가 논의를 거쳐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함.

3. 자활사업 프로그램 신설 및 보완

□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 자활이 생계급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자활과 관련된 기준은 가끔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과거 지역자활센터에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었음. 자활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했음.

- 그러나 지역자활센터가 사례관리를 담당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사라짐.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재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근로유지형 사업임. 이것은 질병이나 노화 등으로 5시간 이상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 유형임.

- 근로유지형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 또한 근로유지형은 전체 자활 참여자 중 20%가 넘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됨. 이러한 기준만 철폐해도 사회적응이 필요한 참여자에게 기존의 자활과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실제 수요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부활하는 것도 필요하고, 조건부 수급자를 책정하는 데 변화가 필요함.

- 지역자활센터에서 정신질환 보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임. 지역자활센터에 보호가 필요한 참여자

가 많아지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참여자의 경우 자활센터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김.

-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 조건부 수급자 선정에서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4. 대상자 선정과 관리방식의 개선

□ 자활 참여자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세분화된 판정 체계 도입

○ 탈수급·탈빈곤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 주고, 그것이 힘든 대상자는 사례관리를 통해 보호해야 함. 이러한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근로능력 유무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된 판정 체계가 필요함.

○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때, (1) 사례관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2) 근로능력이 있으나 최소한의 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 (2) 자립을 목표로 근로할 수 있는 대상자 등의 구분이 필요함. 필요하다면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음.

- 분명한 것은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상당수는 탈수급, 탈빈곤을 목표로 자활에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임.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확대

○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 수준은 다소 높지만 다른 조건이 열악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대상자도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야 함.

-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함. 이러한 대상자를 자활에 참여시키고 교육·훈련을 제공하면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여 경쟁력 있는 자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참여자 특성에 맞는 단계별, 트랙별 사업 추진을 통한 탈수급 촉진

○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단계별, 트랙별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참여자의 탈수급을 촉진해야 함.

- 예를 들어, (1) A track(사례관리-신용회복, 복합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문제해결 트랙), (2) B track(자격증 취득, 교육 및 시간제 근로, 근로역량강화 트랙), (3) C track(자산형성 및 자립준비 트랙) 등으로 세분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대상자 위탁 전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의 정기회의 개최가 필요함.

□ 자활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자활에서 취업성공패키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탈수급 후 다시 수급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자립에 성공한 참여자의 직장 또는 가정에서 계속해서 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담당할 실무자의 인력 보강이 필수적임.

5. 자활급여의 현실화

□ 자활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참여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수준의 급여 때문임.

○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적극적으로 탈빈곤·탈수급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빈곤 추락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6. 자활 사례관리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 사례관리 인력 충원과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사례관리를 수행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추기도 어려움.

○ 특히 알코올이나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는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 담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연계하고 제공하기에는 역량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함.
-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을 때는 게이트웨이 과정에 30명 가까이 몰릴 때가 있는데, 소수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힘든 업무임.

○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공공 부문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함. 자활 참여가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 참여자뿐 아니라 실무자의 역량을 계속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는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대상자의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실무자·상담가로서의 자질을 훈련할 필요가 있음.

7. 민관 협력 강화와 집중적 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도

□ 초기에 관련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집중적 지원

○ 수급자를 초기에 탈수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접근을 단기간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 시군구·읍면동 지자체, 민간 기관 등이 각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력할 때 자립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빠르게 탈수급할 수 있음.

- 조건부 수급자와의 기초 상담에서 자활보다 일반적인 일자리로 연계할 때 탈수급하는 속도가 빠름. 자활제도에 오래 머무를수록 탈수급 가능성이 낮아짐. 수급자가 된 후 초기 3년 안에 탈수급하는 경우 성공적인 자립이 가능하고 재수급하는 가능성도 낮음.
- 오랜 기간 동안 수급자로 남아 있는 대상자의 경우, (1) 탈수급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2)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탈수급하지 못함.
- 자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한 대신 그만큼 임금수준도 낮음. 오랫동안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적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적응이 됨.

○ 평가 시스템은 수급자가 취업 및 탈수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모든 공급자의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함.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7).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 고용노동부.

교육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교육부.

교육부. (2017b).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부.

국토교통부. (2017).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국토교통부.

김태완, 전지현. (2016).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b). 2017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 자활사업 안내(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7d). 2017년 자활사업 안내(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안]. *관계부처합동.*

경기도시공사. (2017).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안내.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gico.or.kr/mobile/business/welfare/welfare04.do에서 2017. 7. 19. 인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기존주택 전세임대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LH에서 2017. 7. 19. 인출.